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# 포항시보

제1122호 2016. 11. 29(화)

## ◀ 훈 령 ▶

- 포항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(제329호) ..... 2

## ◀ 고 시 ▶

- 포항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제2016-147호) ..... 11

## ◀ 공 고 ▶

-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(제2016 - 1432호) ..... 13
- 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“안”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(제2016-1440호) .....14
-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[변경]수립 본안보고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(맑은물사업소 제2016-42호) .....16
- 제235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집회 공고 (포항시의회 제10호) .....17

회								
람								

**훈 령**

포항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**포 항 시 장 이 강 덕**

2016년 11월 29일

포항시 훈령 제329호

**포항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
일부개정규정**

포항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포항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”을 “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」 제19조제8항에 따른 포항시설계자문위원회”를 “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제8항에 따른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설계자문위원회”를 “기술자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시안전국장”을 “건설교통사업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설계자문 업무담당”을 “기술자문(이하 “자문”이라 한다) 업무팀장”로, “설계자문”을 “기술자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설계자문(이하 “자문”이라 한다)대상공사”를 “자문대상공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하다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설계자문대상”을 “기술자문대상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공사중”을 “공사 중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5호 중 “주문 부서”를 “주무부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설계자문신청서”를 “기술자문신청서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주문 부서”를 “주무부서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별지 제4호 서식)”을 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### 기 술 자 문 신 청 서

「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」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자문안건을 작성하여 기술자문을 신청합니다.

- 1. 공 사 명 :
- 2. 공 사 개 요 :
- 3. 추 정 공 사 비 :
- 4. 용 역 착 수 일 :
- 5. 준공예정년월일 :
- 6. 설 계 자 :
- 7. 설계 특기사항 :
- 8. 기술 자문 단계 : 착수단계, 중간단계, 마무리 단계
- 9. 기술 자문 안건 : 덧붙임 기술자문안건과 같음

붙 임 : 기술자문 안건 1부

20 . . .

신청인 : (인)

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회 의 록

- 1. 안 건 :
- 2. 회의일시 :
- 3. 장 소 :
- 4. 참 석 자

일련번호	위원 성명	서명	비고

- 5. 회의결과 :

포항시기술자문위원회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## 기 술 자 문 대 장

		담당자	팀 장	과 장
의안 번호		자문일자		
사 업 명				
위 치				
사업개요		시행부서		
용역비		설계자		
자문결과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포항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</u></p>	<p><u>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<u>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</u>」 제19조제8항에 따른 <u>포항시설계자문위원회</u>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</u>」 제19조제8항에 따른 <u>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구성) ① 포항시 <u>설계자문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<u>기술자문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<u>도시안전국장</u>이 된다.</p>	<p>② ----- <u>건설교통사업본부장</u>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설계자문 업무담당</u>으로 하고, 서기는 <u>설계자문 업무담당</u>자로 한다.</p>	<p>제5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기술자문(이하 “자문”이라 한다) 업무팀장</u>으로 --- <u>기술자문</u> - -----.</p>
<p>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<u>설계자문(이하 “자문”이라 한다)대상공사</u>에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들에 대하여 소집한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 ----- -- <u>자문대상공사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<u>아니</u>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</u>한다.</p>

③ (생략)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(별지 제2호 서식)을 작성하고,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, 설계자문대장(별지 제3호 서식)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의 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9조(자문대상) 위원회의 자문 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단순반복공종 또는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은 제외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10억원 이하의 공사중에서도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 또는 시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

제10조(자문범위) 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 다만, 설계에 반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주문 부서가 자문하는 사항

제11조(자문신청)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와 위원장이 요구하는 설계도서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회의록) -----  
-----  
-----  
기술자문대장-----  
-----.

제8조(비밀유지) -----  
-----  
----- 안  
니 된다.

제9조(자문대상) -----  
-----.  
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 공사 중-----  
-----  
-----

제10조(자문범위) 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-----  
----- 주문부서-----  
-----

제11조(자문신청) -----  
-- 기술자문신청서-----  
-----



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안설명) 회의를 요청한 주문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 및 설계용역회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을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3조(결과처리) ① (생략)  
②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심의 요청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,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별지 제4호 서식).

-----.

제12조(의안설명) ----- 주 무부서-----

--.

제13조(결과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1. 개정이유**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
- 2016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을 도시안전국장에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 직위 변경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(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1조)
  -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
  -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변경
  - 설계자문대장을 기술자문대장으로 변경
  - 설계자문신청서를 기술자문신청서로 변경
- 나. 조직개편에 따른 부위원장 직위 변경(제2조)
  - 도시안전국장을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 변경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6 -147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포항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『같은 법』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11. 25.

포 항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  -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61-189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  - 명 칭 : 도시계획도로(소로2류6호선)개설 공사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  - 사업규모 : 당초 566.5㎡(L=70m, B=8m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변경 577.0㎡(L=70m, B=8m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명 : 한국자산신탁(주) 대표자 김\*철
 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6, 역삼동, 카이트타워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2014.01.03 ~ 2017. 06.30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자치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붙임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  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.
  - ※ 관계 편입토지조서,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(☎054-270-35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【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】

· 위치 :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

#### 【소로2류6호선】

번호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적(㎡)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비고
		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성 명	주 소	성명	주소	권리의종류 및 내용	
합 계				577	577						
1	오천읍 문덕리	161-246	잡	1	1	국 (기획재정부)	국				
2	오천읍 문덕리	161-250	대	162	162	이*배	남구 오천면 문덕동 161-118				
3	오천읍 문덕리	161-248	잡	24	24	국 (국방부)					
4	오천읍 문덕리	161-247	잡	21	21	국 (기획재정부)					
5	오천읍 문덕리	161-189	잡	369	369	허*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 로1667번길 8 101동 2004호(우신뉴 타운아파트)				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2016 - 1432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포항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,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시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11. 22

포 항 시 장

- 1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2. 공람일시 및 장소 : 포항시청 도시녹지과(09:00 ~ 18:00)
- 3.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

사업의종류	위 치	사 업 내 용	시행기간	사업시행자
공원 (근린공원)	포항시 북구 장성동 335-1번지 일원	○ 근린공원 : 17,403㎡ - 장량 국민체육센터 건립 (건축면적 2,711.36㎡)	실시계획인가일 ~ 2018.12.31	포항시장

- 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녹지과 [☎(054) 270-3223]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공고 제2016 - 1440호

**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“안”,  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**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“안”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을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1월 25일  
**포 항 시 장**

**1. 계획의 개요**

가. 계 획 명 : 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“안”

나. 위 치 : 포항시 남구 지곡동 일원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

1) 지구단위계획구역

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지곡1	지곡지구	남구 지곡동 일원	-	증)1,610,034	1,610,034	

나) 결정 사유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결정사유
신설	지곡지구	포항시 지곡동 일원	1,610,034	구법인 「도시계획법」에 의거 조성 완료된 「지곡단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」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주변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구역 결정함.

2) 지구단위계획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**2. 열람 및 의견제출**

- 가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6. 11. 25. ~ 2016. 12. 19. (20일간, 국·공휴일 제외)
- 나. 열람장소 :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효곡동 주민센터
- 다. 열람내용 :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, 전략환경영향평가서 (초안)
- 라. 관계도서 : 열람장소에 비치(실음 생략)
- 마. 제출방법 : 열람 장소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

**3. 전략환경영향평가서 (초안) 주민설명회 개최**

- 가. 일 시 : 2016년 12월 9일(금) 16:00
- 나. 장 소 : 효곡동 주민센터 회의실(2층)
- ※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요약서는 포항시 홈페이지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등재(공람)

- 4. 기타 :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(☎054-270-346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# 공 고

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16-42호

##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[변경]수립 본안보고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
「수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「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본안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1월 23일  
맑은물사업본부장

### 1. 계획의 개요

- 계 획 명 :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(변경)수립
- 수립권자 : 포항시장
- 목표년도 : 2035년
- 본안내용 : 계획인구 및 용수수요량, 정수시설계획, 송배수시설 확장계획, 노후관로 개량계획, 연도별 투자계획

### 2.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본안 보고서 공람

- 공람기간 : 2016. 11. 24 ~ 12. 13(공휴일 제외)
- 공람장소 :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
- 의견제출
  - 기 한 : 2016. 12. 13까지
  - 장 소 : 공람장소 및 설명회
  - 방 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함.

### 3. 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2016. 12. 9(금요일) 14:00
- 장 소 :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

### 4. 기타 문의사항
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(054-270-5353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우리시 홈페이지([www.ipohang.org](http://www.ipohang.org))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본안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

포항시의회 공고 제10호

## 제 235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집회 공고

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,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일시: 2016년 11월 30일(수요일) 오전 11시 00분

장소: 포항시의회 본회의장

2016년 11월 28일

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